

2026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 창업기업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운용 이해를 위해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분야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개요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 (지원내용)
 - 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2백만원 이내(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 ※ 지원항목 예: 지식재산권(IP) 관련 출원비용 (특허 상표 등), IR홍보용 자료 제작 (브로셔 제품 소개서 영상 등), 시제품 제작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등 간접사업화 비용
 - ※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성 경비는 제외
 - 창업실무·해운물류 교육 및 멘토링, 사이트 투어 등
- (선정규모) 8개 팀 내외
- *(지원대상) ‘전국 AI 기술 기반’ 스마트선박, 디지털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업력 7년 이내
 - * 2025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참여기업 신청 가능/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추진일정) : 협약 시작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예정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최종결과발표	협약체결
6&8월~7.10(금)18시	7월 3주	7월 3주	7월 4주

※ 상황에 따라 상기 절차 및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 (신청기간) 2026. 6. 8.(월) ~ 7. 10.(금) 18:00
- (신청방법) 울산스타트업허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https://ulsanstartuphub.kr/program?category=apply>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울산스타트업허브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필수	① 참가신청서	첨부양식 사용 (양식변경 불가)
선택	② 항만공사 실증(PoC) 추진계획[서식1]	
필수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서식2]	자유양식
필수	④ 사업계획서(IR자료)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선택	⑥ 기타	제품소개서 등 자유양식

* 신청서 파일명에 소재지와 기업명 기재하여 제출

(신청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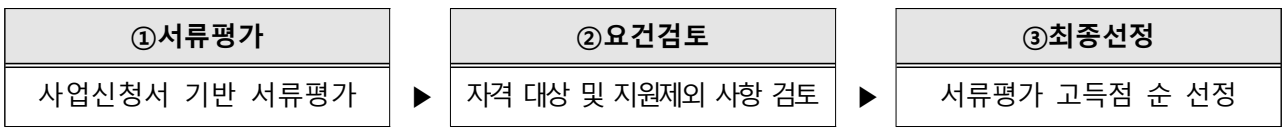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 및 수행기관(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접수 시점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며, 사업화를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음

3 선정평가 관련

□ 평가절차

- 총 1개의 평가(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신청자격 요건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항만공사 실증(PoC) 계획 포함 기업

□ 평가지표

- 사업화 아이템의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기술 개발 및 실증 계획, 협업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PoC 계획, 대표자(신청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화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혁신성, 기술역량보유 여부(특허, 지적재산권 등), 보유기술 및 BM 우수성 등
협업 역량	• 주요 항만공사 협업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실현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매출전략) 등
프로그램 참여 의지	• 해운물류 관련 수요기업 현장실증(PoC) 참여 의지, 적용계획의 구체성 및 협업 추진 적극성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4 지원 내용

□ 기타사업화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 운영 프로그램

순번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지원기업	기 간	비 고
1	항만 사이트 투어	- 수요기업 현장 사이트 투어 및 간담회 * 4대 항만공사 중심 사이트 투어 추진 - 대중견기업의 수요기술 Needs에 맞는 기업 연계 및 현장적용 지원	8개사	'26.7~10	
2	멘토링 및 컨설팅 데이	- 사이트 투어 기업 중 멘토링 필요기업 선별 - 과제 고도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멘토링 - 우수기업의 경우 투자연계 기회 제공		'26.7~11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 모든 자격 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이후 별도의 계획, 증빙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협의 없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결과 발표 이후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 선정자가 공고문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사·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 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발이 완료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수행기관(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창업 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오픈이노베이션팀

✉ jaee@ccei.kr/ydyne88@ccei.kr/jhw@ccei.kr/chanmi1009@ccei.kr

☎ 052-230-3441/3430/3444/3445